

서울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나202160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나202160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525545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B, C의 파산관재인 D

피고, 항소인 A

변론 종결 2015. 3. 5.

판결 선고 2015. 4. 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525545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D에게 177,189,135원, 파산채무자 C의 파산관재인 D에게 193,280,20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3.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가.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D에게 177,189,135원,

나. 파산채무자 C의 파산관재인 D에게 193,280,20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보증기금'이라 한다)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1	2010. 3. 16.	2011. 3. 15. (2013. 3. 15.)	36,000,000원 (40,000,000원)	중소기업은행
2	2010. 3. 16.	2011. 3. 15. (2013. 3. 15.)	144,000,000원 (160,000,000원)	중소기업은행
3	2010. 11. 25.	2011. 11. 24. (2012. 11. 23.)	85,000,000원 (100,000,000원)	중소기업은행

나. E은 보증기금에게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보증기금이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B, C는 E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기금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보증기금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1. 30.까지는 연 14%, 2012. 12. 1.부터는 연 12%이다.

다. E이 2012. 8. 23.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는 보증사고를 일으키자 보증기금은 2012. 9. 26. E을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 267,313,939원(= 제1신용보증약정 36,259,981원 + 제2신용보증약정 145,080,572원 + 제3신용보증약정 85,973,3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그 후 보증기금은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중 2012. 9. 26. 1,167,290원, 2012. 9. 27. 800원을 각 회수하였는데, 위 각 회수된 금원에 대하여는 447원의 확정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로 인한 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한 비용으로 합계 2,942,170원을 지출하였다가 그 중 15,950원을 회수하였다.

마. 한편, B, C는 2012. 6. 21. 그들이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①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1. 접수 제14406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14406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보증기금은 2013. 6. 12. E을 상대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B은 2013.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4811호(2013하면4811호)로, C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4812호(2013하면4812호)로 각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파산자 B, C의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각 선임되었다.

아.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6조, 제347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기금이 제기한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소송을 수계한 후 위 법률 소정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자. 한편, B, C는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를 받아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원에 매도하였고, 위 매매대금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4,050,000원을 제외한 895,950,000원을 B, C가 각 1/2지분인 447,975,000원씩 갖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B와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자인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G에게 각 190,000,000원씩,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각 64,694,795원씩 변제하였고, B이 마포세무서에 조세채무 16,091,070원을 변제하였으며, 그 후 남은 금액인 B의 177,189,135원과 C의 193,280,205원을 각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B, C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 3, 4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B, C로부터 변제받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게 변제금을 지급한 자는 B,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F이므로 제3자인 F의 피고에 대한 변제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위 근저당권설정 당시 B, C는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조 제3호의 부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

살피건대, B,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선순위채권자인 G 및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잔액 177,189,135원과 193,280,205원을 각 피고에게 변제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설령 B, C가 피고에 대한 위 변제에 현실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채 F이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채무자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B, C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변제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B, C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과 그 효과가 다르지 않아 B, C의 행위와 동일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면으로 보나 이유 없다.

다. 고의부인 해당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나, 한편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갑 제11, 13, 14,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 C가 2012.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해 7. 17. B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단110호로, C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단109호로 각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각 2012. 8.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B이 대표이사, B의 부인인 C가 사내이사로 있던 E도 2012. 9. 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점, ② 피고는 2012. 7.경 E이 일시적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영업실적이 회복되던 추세였기 때문에 E의 회생절차 폐지나 B, C의 파산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E은 2010년 경 이후 매출액이 급감하였고 2012. 7.경 B이 대표이사로 있던 관계회사인 J 주식회사가 폐업하여 E의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는 바람에 회생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후 회생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3. 3. 22. E의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B, C의 각 회생절차 역시 2013. 4. 2. 각 폐지되었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5. 9. B, C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각 2013. 8. 20.에 파산선고를 받았던 점, ④ 그런데 B, C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갑 제16호증의 4, 갑 제17호증의 4)에 B에 대한 채권은 2,826,634,101원, C에 대한 채권은 1,857,992,789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⑤ 그럼에도 B, C가 그들의 채권자들 중 한명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고가 우선적으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행위는 다른 파산채권자들에 앞서 피고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다른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결국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라 그 매매대금으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에 해당하며, B, C는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행위 및 변제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고의부인의 대상에 해당되므로, 나아가 같은 조 제3, 4호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라. 소결

(1) 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은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인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인된 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위 근저당권설정 및 변제행위가 부인된 결과 피고가 변제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이 사건의 경우 변제받은 날부터 발생한 법정이자 역시 과실로서 함께 반환되어야 하고, 한편 원고가 소로서 부인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부인권 행사 다음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B로부터 지급받은 177,189,135원, C로부터 지급받은 193,280,20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변제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3. 8.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B, C와 실제 금전거래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일 뿐이며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0,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남편인 H 명의로 C에게 2010. 7. 5.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6. 1억 원을 대여하기까지 실제 금전거래를 하여 B, C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익자의 악의 추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남편인 H와 함께 서울 서초구 I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피고는 2008년경 B, C 딸의 신혼집을 중개하면서부터 B, C를 알게 되었고, 그 후 2010. 7. 5.부터 약 1년 7개월간 B, C와 수차례 금전거래를 해왔는데, B, C를 알고 지내면서 금전거래를 하여 온 경위, 그 기간 및 피고의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는 B, C의 경제사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동안 별다른 담보 없이 B, C에게 금전을 대여해오던 피고가 뒤늦게 2012. 6. 21.에 이르러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③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B, C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와
B, C 사이의 금전거래가 진실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 C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배광국

판사임영우

판사최한순

별지